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	2471
-----------	------

2021년 6월 18일
교 육 위 원 회

I 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5월 28일, 양민규 의원
2. 회부일자 : 2021년 5월 31일
3. 상정일자
 - 제301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
(2021년 6월 18일 상정, 원안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양민규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우리나라는 1991년 UN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」을 비준함에 따라,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, 교육권,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.
- 그러나 여러 교육지원 혜택에서는 외국인이기에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, 특히 보편적 유아교육과정을 위한 누리과정비 조차 외국인의 경우엔 전액 자부담하고 있어 심각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.

- 이에 교육 현장에서 만큼은 외국인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- 또한 다문화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, 다문화교육 사업을 역량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다문화교육 수요를 충족하고,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사업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의2 신설).
-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의2 신설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양민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471호로 발의되어 2021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아동인권 보호 차원에서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하고, 다문화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

- 현재 초·중·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

에게도 학비가 무상지원 되고 있지만,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,

우리나라 국적 유아에게는 공립유치원 월 13만원(교육과정 8만원, 방과후과정 5만원), 사립유치원 월 33만원(교육과정 26만원, 방과후과정 7만원)씩 학비가 지원되지만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학비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.

-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에 UN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」을 비준한바 있으며, 동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그리고 동 협약에 따르면 ‘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, 어떤 인종이건, 어떤 종교를 믿건,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, 부자건 가난하건, 장애가 있건 없건,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.’는 ‘비차별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이러한 기본원칙을 준수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3일에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‘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안’을 제안하였고,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교육부의 「유아학비 지원계획」 지침 개정¹⁾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.

- 이와 같이 교육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불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²⁾,

동 개정조례안이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됩니다.

1) 現 지침 상 유아학비 지원 제외 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(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함)

2) 보도자료 : ‘사립유치원은 학비 돌려주는데...공립 다니는 외국인도 내라니’(연합뉴스, 2020.4.23.)

나. 안 제3조의2에 대한 검토

- 안 제3조의2에서는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, 같은 조 제3호를 통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학생에 대하여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현재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적용과 아동 인권의 보호라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.

특히 그 적용범위를 「유아교육법」에서 정한 무상교육기간인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으로 함으로써 국내 모든 유아들의 수혜기간을 동일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³⁾

- 다만 서울시 관내 유치원에는 684명의 외국 국적 유아가 재원 중인바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연간 약 18억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⁴⁾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8588, 2021.6.4.).

[표] 서울시 만 3~5세 외국 국적 유아 유치원 재원 현황

(‘21. 4. 1. 기준, 단위 : 개원, 명)

전체 유치원 수	외국유아 재원 유치원 수(비율)	전체 유아 수	외국유아 수(비율)
789	280 (35.4%)	69,564	684 (1.0%)

3) 제24조(무상교육)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(無償)으로 실시하되,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18.7억원 = 공립유치원 463,680천원[교육과정(80,000원*318명*12월)+방과후과정(50,000원*264명* 12월)] + 사립유치원 1,404,840천원[교육과정(260,000원*366명*12월)+방과후과정(70,000원*313명*12월)]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Ⅴ. 토론요지 : 없음.

Ⅵ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Ⅶ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사업)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
2.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
3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
4.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사업의 위탁)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센터 및 다문화교육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3조의2(사업)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.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4.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<p><신 설></p>	<p>제11조의2(사업의 위탁)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센터 및 다문화교육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